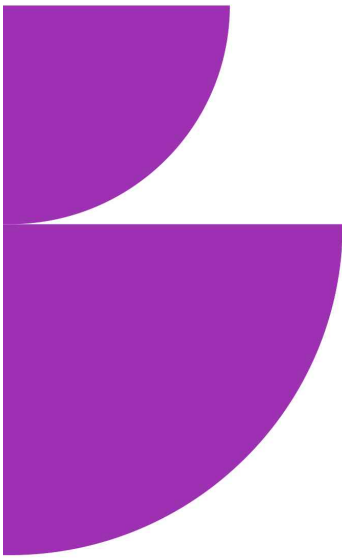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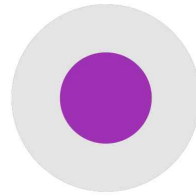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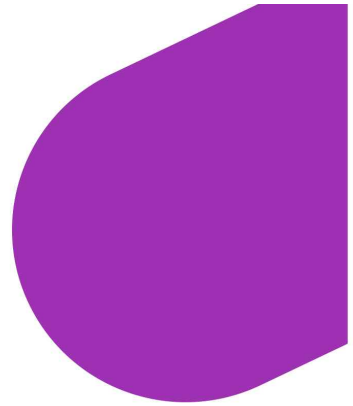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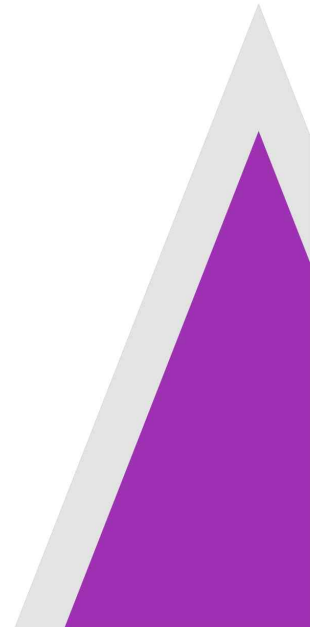




2023
동대문구
감사 사례집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




Contents

I. 감사	05
II. 조사	121
III. 계약심사	131
IV. 청렴	161



PART I

감사



01 행정지원 분야	07
02 민원여권 분야	23
03 기획예산 분야	35
04 교통행정 분야	43
05 자동차관리 분야	51
06 주차행정 분야	59
07 홍보 분야	69
08 안전재난 분야	77
09 보건 분야	89



I-1
행정지원
분야

1.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근무일수 산정 소홀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VI.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라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x 봉급 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부서 직원들이 공가·연가·반일연가·외출 등을 사용한 날을 출근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월간 출근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2020. 1. 1.부터 2023. 2. 27. 감사일 현재까지 모두 34건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또는 과소 청구·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계 307,770원 환수 및 과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계 179,900원을 추급하고 앞으로 출근 근무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 건강검진에 따른 공가사용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6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에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같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개인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변경하는 등 실제 상황에 따라 공가를 변경하여야 함

지적사항

◇◇◇◇과는 소속직원 2명이 건강검진의 사유로 소속 부서 장에게 공가를 허가받았으나, 공가 당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공가를 사용한 날을 연가보상일수에서 제외하지 않음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213,58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연가 보상비 지급 시 연가보상일수 산정에 유의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3.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정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 ■■■ ■■■■■ 조성 공사(전기)' 등 총 7건의 공사에 대해 준공검사일이 아닌 준공일 등을 기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잘못 설정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등 계약과 관련하여 앞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잘못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4. 용역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확인 소홀

관련규정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 및 ★★★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면서, 정산과정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보험료 270,050원을 청구하자 이를 삭감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산을 완료함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정산 누락한 손해배상보험(공제) 보험료 270,05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용역계약 및 정산 시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5.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회계법」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은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규정

그리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린다고 명시

아울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공용차량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두 22건의 공용차량 유류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2021 ~ 2022년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분에 대한 포인트 계 641,817원이 부서통장으로 자동환급되었음에도 당해연도에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고, 폐차공용차량[스타렉스(○○거○○), 2021. 3. 9.폐차]의 자동차보험해지로 인한 잔여기간 보험료를 환불받지 않았으며, 차량정수 배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대·폐차, 차량지원실 운영 등 공용차량 관리 전반에 있어 「지방회계법」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

6.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보완 필요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 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결격사유임에도 자격검증을 위한 법적근거 및 체계적인 행정절차가 없어 당사자에게 구두로만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검증방법의 보완이 필요

조치사항

권고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업무 수행 시 위촉대상자에게 ‘비당원 확인서’ 징구 등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마련

7.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대한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7조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험위원 구성 시 시험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고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신체비만활동 분야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채용에 대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 응시자 ◎◎◎이 ■■■■과 ○○○○팀에서 2018. 3. 26. ~ 2019. 12. 31.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해당 기간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과 ○○○○팀장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함

조치사항

신분상주의

임기제공무원 시험위원 위촉 시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8.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정비 소홀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비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기획예산과는 매년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통해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근거가 필요한 자치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적용대상이 없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도록 요청

지적사항

◇◇◇◇과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차세대 복무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근무상황부, 근무상황카드 및 출장신청서 비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음

조치사항

개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근무 상황부, 근무상황카드 및 출장신청서 등을 현행 운영 방식에 맞게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규칙)를 정비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9. 공무국외출장 운영 부적정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급의 공무원과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규정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는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여비는 ‘의원국외여비’에서 집행해야 하며,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과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에 따라 2022. 11. 2.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인 감사담당관을 심사위원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2022. 11. 8. 해당 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면서 지방의원인 서울시의회 의원 □□□에게 집행부 예산인 국제화 여비로 1,964,620원을 지급

조치사항

신분상주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감사담당관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집행부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0. 물품 구매 부적정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각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재무과장은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1건당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국내 자매도시 구호물품 전달 계획'에 따라 자매 도시에 전달할 구호물품을 구매하면서 1건당 구매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을 계약 체결하지 않고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모두 6건 16,310,000원을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물품을 구매할 때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1. 기념품 등 지급관리대장 작성 소홀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 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2년 7월 우리 구 자매도시(▲▲ ▲▲군 외 8개 도시)에 기념품(화분)을 전달하면서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2.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개선 공사 검사업무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CCTV설치, 보도블럭 교체 등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개선 공사를 하면서 모두 27차례에 걸쳐 업무 담당자나 ○○○○팀장 등을 현장감독공무원이나 검사(수)자(이하 “검사자”로 한다)로 한 준공검사(감독)조서나 물품검사(수)조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사자가 검사기간 중 청풍유스호스텔에 출장 간 내역이 없는 등 현장 확인 없이 준공검사(감독)조서 등을 작성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개선 공사 등을 할 때는 현장 확인 없이 준공검사(감독)조서 등을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3.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정산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르면 복지점수 계산방법은 월할 계산이 원칙으로 연도 중에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 복직, 해임, 파면, 면직 등의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하고, 복지점수의 과오배정으로 인한 소급·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 배정·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

그리고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는 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부여하고, 전출입자의 경우 전출기관은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전입기관은 전출입 다음 월부터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하며, 휴직자의 경우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신규임용자, 휴직자, 복직자 등에게 맞춤형복지포인트를 배정 및 정산하면서 모두 8차례에 걸쳐 8명에게 계 824,210원(배정 580,840원, 정산 243,370원)의 맞춤형복지포인트를 과소 지급

조치사항

시정

과소 지급한 맞춤형복지포인트 계 824,210원을 추가 지급하고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할 때 복지점수 산정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4.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등 예산지원 필요

관련규정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는 2017. 1. 8.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 자치법규 근거규정 마련 협조 요청」(재정정책과-116) 공문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등의 과목으로 예산편성 집행은 가능하나,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법규에 후생복지시설로 구내식당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후생복지 지원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등을 제·개정하도록 전국 시·도에 시달

한편 우리구는 2011. 6.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같은 조례 제6조에 구내식당을 후생시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2019. 11. 14. 해당 조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

지적사항

이번 감사기간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내식당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구 등 13개 자치구는 외부업체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동대문구와 □□구 등 12개 자치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그런데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12개 자치구 중 종사자 인건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 자치구는 동대문구와 ◎◎구뿐이고, 동대문구 구내식당은 2022년 기준 76,586,660원의 운영적자를 기록

위와 같은 구내식당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식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구내식당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조치사항

통보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안을 마련

I-2
민원여권
분야

1. 종합민원실 화분 유지관리비용 지출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32조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재무과장 및 회계담당부서장은 위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종합민원실 화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집행이 요구됨에 따라 화분 유지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화분 유지관리비용(월 40만원, 연간 480만원)을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에 따라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종합민원실 화분 관리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 물품 구매 및 물품 관리 업무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별표2]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사무실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캐비닛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하여야 할 물품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고, 물품관리대장에도 등재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사무실 유지관리 등을 위해 물품 구매·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에 철저

3. 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인계·인수 관리 소홀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록관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이관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주소홀히 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으로 부서 간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부서 간에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

4. 공금예금계좌 이자수입 세입조치 미이행

관련규정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의 세입 회계연도는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라고 되어 있으며, 우리 구 재무과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공문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등을 반드시 세입 처리하도록 각 부서(동)에 안내

지적사항

◇◇◇◇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계좌' 등 4개 공금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계 216,672원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세입조치를 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공금예금계좌 이자수입을 세입이 발생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세입조치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5.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지연 과태료 미부과

관련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대한 갱신 업무를 처리하면서 ▲▲▲ 외 6명에게 적성검사 지연에 대한 과태료 계 1,190,000원을 부과하지 않음

조치사항

신분상주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갱신 업무 처리 시 적성검사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6.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관련규정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임자는 위임했다는 표시로 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되어있으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인감신고인의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임일이 기재되지 않아 위임일을 확인 할 수 없는 위임장 35건을 접수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조치사항

신분상주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 할 때는 위임장에 위임일이 누락되어 있는지 또는 위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7. 수렵면허 갱신 안내 소홀

관련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하고,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갱신 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수렵면허 갱신 및 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 대해 안내하면서 최소 3일에서 최대 236일까지 총 43건의 안내 지연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관련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르면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르면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신고의무자)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르면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에 따르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허가받은 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 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

또한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르면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연 기간에 따른 부과기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별표3]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과 같이 규정

지적사항

◇◇◇◇과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게을리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비동거 친족(신고적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신고지연 기간 산정을 소홀하게 하는 등 과태료 5건 계 50,000원을 착오 부과하거나 과소 부과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부적정하게 부과한 과태료(과소부과 : 3건 24,000원, 착오 부과 : 2건 26,000원)는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신고 지연기간을 착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9. 여권 관련 제한구역 출입자 기록부 미작성

관련규정

「여권사무 보안 지침」(외교부 지침) 제22조에 따르면 여권정보처리 기관장은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그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제한구역'에는 여권사무보안담당자의 입회가 있어야 비인가자가 출입할 수 있으며, 여권사무보안담당자는 출입자 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에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2. 7. 감사일 현재까지 비인가자의 '제한구역' 출입통제 관련 '제한구역' 출입자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과는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하고 '제한구역'에 출입하는 비인가자의 출입통제사항을 기록·유지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

I-3
기획예산
분야

”

1.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지원 미흡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및 제128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또한 「지방회계법」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인수위원회 식비는 급량비 지급단가(1인당 1식 8,000원 이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2. 6.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동대문구청장직인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면서, 속기보조원의 임금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를 미이행하였고, 인수위원회 운영비를 2022. 6. 13.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인수위원회 식비 명목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계 2,560,000원을 집행하면서, 집행내역에 대상자(인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지급단가(8,000원)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시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사업 사후 예산조치 미이행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2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19 회계연도의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에 대한 예산 성과금 심사(2020. 5. 7.)를 통해 ■■■■과의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의 지출절약액 295,015,000원을 주요 사업비 절약으로 심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인 2021년도의 예산편성 시 지출 절약액 전액을 감액편성하지 않고 ■■■■과의 세출예산 요구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세출 사업예산(안) 심의 안건 상정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예산성과금 지급 및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에 철저

3. 마을변호사 상담료 원천징수 부적정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84조, 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소득세(100분의 20)를 원천징수 해야 하며 이 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60%)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지급금액 기준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과 같이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2. 16.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에게 매월 상담료(서울시 예산)를 지급하면서 월 상담료가 125,000원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마을변호사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계 44,000원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마을변호사 상담료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이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4.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이행상황 평가 미실시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같은 규칙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 되었는지와, 같은 규칙 [별표2] 사무전결 구분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9명 이내의 전담평가단(공무원이 아닌 사람 3분의 1이상 포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2. 16.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 사무전결의 구분대로 결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5. 송무활동비 지급 누락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에 따르면 구청장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 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으로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2. 16.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수행자등에게 총 126건 계 6,30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총 4건에 대한 송무를 수행한 ○○○○과 ◇◇◇(現 □□과) 외 4명에게 계 250,000원의 송무활동비 지급을 누락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송무활동비 지급 누락분 250,000원을 소송수행자에게 추급하고, 구청장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으로 지정된 소송수행자에게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때 대상자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

I-4
교통행정
분야

”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부적정

관련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긴급 수송 및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등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며,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하며,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6. 12. 감사일 현재까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하면서 차령(9년) 초과한 ▲▲우 ▲▲▲▲ 외 1대 차량에 대하여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확인하지 않고 최소 182일 ~ 최대 185일 초과하여 모두 5건의 허가를 승인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업무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

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미이행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 10% 이상인 공사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2개의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 전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데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변경 후 계약심사를 요청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공사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전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3. 보행안전도우미, 교통통제원 등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하고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비용정산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년 옐로카펫(싸인블럭) 설치공사' 등 8개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시 교통통제원, 보행안전도우미 등의 근무상황부 및 임금지급내역서 등 비용 집행 근거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에도 정산과정에서 이에 대한 감액조정 없이 12,144,815원을 과다 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감액조정 없이 과다 지급한 안전관리비 계 12,144,815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교통통제원, 보행안전도우미 등 안전관리비를 비용집행 근거 없이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4.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사명,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보관한 장소 등의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활용 등의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고, 무단방치 자전거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청구하지 아니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고 규정

또한 「지방회계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하며,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사단법인 ■■■■■(대표 : ★★★)와 용역계약을 통해 관내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에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아래 매년 수거량의 7%를 재생자전거로 기증

조치사항

신분상주의

앞으로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처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할 때에는 과업지시(내용)서에 무단방치로 수거한 자전거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매각대금은 구에서 1년간 보관한 후 구 금고에 귀속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5.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모집 공고 부적정

관련규정

2020~2023년 서울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지침에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자치구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접수 및 선발하라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면서 공고기간을 7일 미만으로 하거나 업무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모집 공고를 적정하지 않게 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할 때에는 업무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7일 이상 공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6.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 누락

관련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차고지 등 외 밤샘주차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2. 7. 30. 및 8. 19.(단속시간 : 18:00 ~ 09:00) 동대문구 관내 민원 다발구역에서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모두 9대의 밤샘주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였으나 2023. 6. 12. 감사일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를 누락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부과 누락한 과징금 700,000원을 부과하고 향후 과징금 부과 대상에 대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

I-5
자동차관리
분야

”

1.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누락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 ~ 5. 19. 감사일 현재까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 중 2022. 1. 1. ~ 5. 19. 감사일 현재까지의 과태료 부과 적정여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자동차 검사 유효만료 31일 경과 후 타 시군구에서 등록 말소된 △△너△△△△ 외 30대에 대한 과태료 계 3,940,000원의 부과를 누락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미부과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과태료 3,940,000원을 부과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시 타 시군구에서 등록말소한 차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대상 차량을 조회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 자동차정비업소 행정처분 절차 부적정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66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했을 때는 1차로 사업정지 30일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

또한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관할관청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5. 25. 현장점검을 통해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인 ●●●공업사(대표 : ■■■)가 사업장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한 행위를 확인하여 2020. 5. 26. 해당업소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보하면서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30일)이 아닌 2차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통보하였으며, 청문 절차 없이 2020. 5. 27. 해당업소를 폐업 처리

조치사항

신분상주의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및 행정처분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3. 자동차관리사업자 개선명령 부적정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총 3차례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을 명하면서 ◎◎카센터(대표 : ☆☆☆) 외 1건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개선명령을 통보하였고, ●●카센터(대표 : □□□)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경과 후 그 이행 여부를 미확인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카센터(대표 : □□□)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명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4. 자동차 검사명령 시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소홀

관련규정

2021. 4. 13. 개정된(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를 명할 수 있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부칙에 따르면 해당 운행정지 명령은 2022. 4. 14. 이후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또한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택시정책과-23767호, 2022. 4. 20.)을 통해 법령 개정 사항을 알리면서, 자동차검사 미수검차량에 대한 검사명령 및 검사명령 미이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명령 등 조치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

지적사항

◇◇◇◇과는 2022. 4. 14. 이후 종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명하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한 대상자 669명에 대해 2022. 4. 18.부터 2023. 4. 4.까지 11차례에 걸쳐 검사명령을 공시송달 하였으나, 공고내용에 개정된 법령을 미반영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종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을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5.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대한 과태료 처분 소홀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52조, 제84조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 따르면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고, 그 집행한 금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5. 19. 감사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통보된 ●●● 외 4명에 대한 과태료 계 2,250,000원을 부과하지 않음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통보된 과태료 2,250,000원 중 기부과한 500,000원을 제외한 1,750,000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업무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6. 자동차 변경등록 과태료 과소 부과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2. 7. 19. (주)■■■의 소유차량 ○○우○ ○○○에 대해 법인 명칭 변경을 이유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자 이를 처리하면서 2021. 2. 5. 법인 주소 변경 등록 미신청 건에 대한 지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2022. 6. 10. 법인 명칭 변경 등록 지연에 대한 과태료 20,000원만 부과하여 계 280,000원을 과소 부과

조치사항

신분상주의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처리 시 기재사항 변경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과태료를 과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
I-6
주차행정
분야
”

1.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Ⅷ.에 따르면 연가보상비 지급 시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5. 31.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직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 정직 1개월(2020. 12. 23. ~ 2021. 1. 22.)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2020년 ~ 2021년 연가보상비 지급 시 감액 조치 없이 계 886,040원을 과다 청구·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886,04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연가 보상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 행정조치 소홀

관련규정

「주차장법」 제19조의20,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0에 따르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기계식 주차장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확인된 ○○○동 ▲▲▲-▲ 외 5개소에 대하여 2022. 10. 12. 관리인 배치에 관한 안내문 발송 후 2023. 5. 31. 감사일 현재까지 고발 등 행정조치를 미이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으로 확인된 ○○○동 ▲▲▲-▲ 외 5개소에 대하여 실제 관리인 배치여부를 확인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앞으로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

3.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VI. 초과근무수당 등, 2. 야간근무수당 및 3. 휴일근무수당”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현업대상자만 해당)에 한하여 실제 야간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5. 19.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한 소속 직원에 대한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지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일 야간근무(16:00 ~ 익일 07:00)를 실시한 소속 직원 18명에 대하여 야간근무수당 대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모두 35건 계 4,460,680원의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을 과다 청구·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4,460,68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휴일 및 야간근무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4.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르면 차량 도난,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 수송·치료, 구난작업, 장애인 승·하차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별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 처리 기준”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내용이 [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심의사항 및 그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에서 작성한 2023. 1월부터 5월까지 위원회 회의록 등을 표본 점검한 결과, 심의안건을 사전검토건과 세부심의 건으로 나누어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록 및 심의결과 세부내역에 심의안건에 대한 부과 또는 미부과라는 최종 결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 처리 기준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여 감경 처리를 하였는지 등 상세한 심의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심의가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조치사항

개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할 때, 의견진술 안건별로 과태료 부과 및 미부과 사유 등 구체적인 심의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5. 공용차량 관리 소홀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5. 31. 감사일 현재까지 차량번호 ●●●라●●●●(니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운행·관리하면서 차량운행일지를 최대 361일 지연 작성하였고, 2023. 1. 25. 이후의 차량운행일지는 실지감사일 현재까지 미작성

조치사항

훈계, 신분상주의

공용차량 운행·관리 시에는 차량상태 등을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반드시 운행일지를 기록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6.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도입 관련 데이터 백업 소홀

관련규정

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행정정보의 변경, 훼손, 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주기를 정하여 별도로 저장·보존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을 폐기할 때도 동일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서울시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통합하여 단속부터 과태료부과까지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간, 위치기반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모두 3차례에 걸쳐 업무협의 등을 통해 각 자치구에 단속시스템 운영 등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단속조회 서비스 통합에 따른 기존 운영시스템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와 6개 자치구(동대문, 종로, 용산, 광진, 노원, 서초)를 대상으로 2020. 5. 24. 행정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다 2020. 6. 29. 관리와 조회시스템까지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전체 서비스를 개시

지적사항

◇◇◇◇과는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기존에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5종의 주·정차단속 관리 시스템 중 '주차위반과태료 종합관리시스템'과 '단속부과 연계시스템'을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으로 대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체 운영 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서순 등 대사자료를 백업하지 않아 2020년 6월 이전 대사자료는 확인이 불가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시 기존 자료의 훼손·멸실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7. 경공매 등 교부청구 업무처리 태만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을 때,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편 법원이나 타 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부동산 등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경·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재산에 동대문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동대문구에 최고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공매통지서 등 교부청구 관련 문서를 등기우편이나 공문으로 보내 배당을 요구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3. 1. 1.부터 2023. 5. 31. 감사일 현재까지 경·공매 등 교부청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원 등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자동차임의경매 최고서 등 문서 53건과 타 지자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공문으로 보낸 압류자동차 공매통지 및 교부청구 등 문서 68건을 문서 접수·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22건(해당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계 9,318,820원, 체납자 20명)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

또한 접수한 전자문서 68건 중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34건에 대해 9건만 배당요구를 하고 나머지 25건(해당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계 11,169,020원, 체납자 48명)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

조치사항

경징계, 신분상주의

법원이나 타 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보낸 교부청구 관련 문서를 수령한 경우 접수·등록 하고 배당요구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I-7

홍보 분야

1. 동대문구 소식지 심의위원회 위촉절차 부적정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소식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홍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명 이내,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이내의 해당자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중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지방의회의원을 소식지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무적 위원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

한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2]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은 구청장 결재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9. 5. 감사일 현재까지 동대문구 소식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위원회별 구의원 추천 명단 알림'(◇◇◇◇과-8850, 2022. 7. 21.)에 따라 2022. 7. 21. ●●●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 처리 하였으나 위원 자격에 대한 검토 없이 동대문구의회에서 일괄 정비하여 통보한 구의원 명단을 위촉 절차에 같음하여 처리하였고, ☆☆☆ 외 4명의 위원을 재위촉 하면서 ◇◇◇◇과장 결재로 처리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지방의회의원을 동대문구 소식지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의무적 위원으로 구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대문구 소식지 심의위원회 위원을 (재)위촉할 때에는 전결권자를 확인하여 사무전결 사항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 동대문글판(구 희망글판) 디자인 제작비 지출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하고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1건당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9. 5. 감사일 현재까지 동대문 글판(구 희망글판) 디자인 제작비용을 지급하면서 소규모 용역에 대한 산출기초조사서 및 검수조서 없이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디자인 제작을 의뢰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동대문글판의 디자인 제작비 지출 시 제작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

3. 통반장 신문 구독료 지출서류 미흡

관련규정

「지방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33조에 따르면 예산을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9. 5. 감사일 현재까지 연간 신문 구독 계획 및 신문 구독부수 조정계획에 따라 관내 14개동 통반장에게 신문을 제공하면서 구독료를 부서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동주민센터로 교부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지급하게 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통반장 신문 구독료를 지급할 때에는 신문 구독 대상자의 구독 확인서류 또는 구독 대상자를 알 수 있는 증거서류 등에 따라 정당한 채권자를 확정 후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4.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작성 소홀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을 제공할 때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 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9. 5. 감사일 현재까지 언론관계자에게 특산품을 제공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지역언론인 등에게 제공한 특산품에 대한 지급관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함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업무추진비로 언론관계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

또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1. 1. 1.부터 2023. 9. 5. 감사일 현재까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1인 1회당 4만원을 초과하거나,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등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계 576,100원의 업무추진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금액 및 지역을 준수하여 집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
I-8
안전재난
분야
”

1.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해촉 절차 소홀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19. 1. 1. 자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공인회계사)을 신규 위촉(2019. 1. 1. ~ 2020. 12. 31.)한 뒤, 임기가 만료되는 2021. 1. 1. 자로 재위촉 또는 다른 위원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재위촉 계획 없이 임기를 연장(2021. 1. 1. ~ 2022. 12. 31.)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심의위원회 개최(2023. 2. 28.) 시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 자격이 없는 ■■■을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심의수당 70,000원을 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용과 관련하여 심의위원의 위·해촉 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

2.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의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로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1. 1. 1.부터 2022. 3. 31.까지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야간근무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같은 기간 소속 직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면서 식비를 지급받은 자를 제외하지 않아 소속 직원 4명에 대해 총 5회 계 48,000원을 과다 청구·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특근매식비 계 48,0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재난 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여 특근매식비를 추가로 지급받은 자를 제외하지 않아 특근매식비를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3.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체결 지연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라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용역의 도급 및 물건의 매입·수리·운반에 관하여는 과업을 수행하기 전이나 물품을 납품받기 전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집행을 요구받은 재무과장은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9. 14. 감사일 현재까지 용역 및 물품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용역 과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물품을 선 납품받은 후 계약을 체결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용역 및 물품계약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업을 수행하기 전이나 물품을 납품받기 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관계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

4.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자치법규 미정비

관련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해당하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

한편, 자치법규의 입안 등에 관하여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에 따르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자치법규 제정 대상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등에는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2019. 8. 7.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통보

지적사항

◇◇◇◇과는 2023. 9. 14. 감사일 현재까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중

조치사항

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동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5. 시기별 안전점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관련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방지시설의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지적사항

◇◇◇◇과는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예방과(2023년 이전 서울시 시설안전과)의 요청에 따라 2020. 1. 1.부터 2023. 9. 14. 감사일 현재까지 설·추석 대비 전통시장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향후 조치예정인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

조치사항

개선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향후 조치예정인 지적사항은 차기 점검 시 점검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총괄부서로서 지적사항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요구

6.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 소홀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게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로 한다고 규정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2. 1. 1.부터 2023. 9. 14. 감사일 현재까지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관리하면서 분기마다 부서별 관리감독자에게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고 교육결과를 제출 받고 있으며, 2023년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업업무 종사자 소속부서에서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인 6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교육결과를 제출한 현업업무 종사자 총 52명에 대하여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분기별 현업업무 종사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결과 법령에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종사자에 대하여 해당부서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독려하거나 직접 교육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7. 사회복지요원 근무지 담당직원 교육 소홀

관련규정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3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지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요원의 신분·근무시간·복무기간·임무·휴가·보수와 전상·공상 등 복무단축에 관한 사항, 신상변동 사항,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사항, 정치행위 금지 등 사회복지요원 담당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9. 14. 감사일 현재까지 사회복지요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간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운영 계획에 따라 매년 반기별 2회 근무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2022년에 사회복지요원 근무지에 관련 규정집을 배부했을 뿐, 사회복지요원 근무지 담당직원 교육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사회복지요원 근무지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8. 민방위 집행 계획 수립 업무 부적정

관련규정

「민방위기본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매년 11월 10일까지 민방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구청장은 통보받은 시·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계획을 작성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말까지 확정하고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편,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르면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9. 14. 감사일 현재까지 구 민방위 집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 2022년 구 민방위 집행 계획 수립 시 구 민방위협의회 또는 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확정하여 특별시장에게 보고하였고, 2023년 구 민방위 집행계획은 감사일 현재까지 미수립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미수립한 2023년 민방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구 민방위협의회 또는 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보고하고, 앞으로 민방위 집행 계획 수립 시 심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9. 민방위복 구매 업무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각 과장은 물건의 매입·수리·운반에 관하여 물품을 납품받기 전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또한 2023년 계약업무 추진계획(2023. 1. 11. 재무과-653호)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해야하며 관외업체로 수의계약 시 관외업체 선정사유 및 관내업체 비교견적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

한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23. 8. 8. 시행)에 따라 민방위복 및 표지장의 제작 양식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3] 민방위복의 제작 양식에 따르면 민방위복의 기관명칭 표지장의 글씨체를 대한민국정부상징체로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9. 14. 감사일 현재까지 민방위복 구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내업체에 대한 확인 없이 관외업체인 (주)○○○○(대표 : △△△)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2023년 5월 구형 민방위복 65벌, 같은 해 8월 신형 민방위복 477벌을 각각 구매하여 납품 받았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또한 2023년 8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신형 민방위복 납품 시 납품 받은 신형 민방위복의 기관명칭 표지장의 글씨체가 법령과 상이하였으나 검사를 소홀히 함

조치사항

훈계

민방위복을 구매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관내업체를 우선 검토한 후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시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시 물품 검사를 면밀히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I-9

보건 분야

1.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1. 10. 1.부터 2023. 10. 24.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한 소속 직원에 대한 관내 출장여비 지급 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하였으나, 출장명령 신청(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 공용차량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설정한 소속 직원 13명에 대해 총 19회 계 250,000원을 과다 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관내 출장여비 및 가산금(1,250,000원) 계 1,500,0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관내 출장 시 공용차량 사용 여부를 잘못 신청하여 관내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2. 감리 용역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소홀

관련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년 시행한 '동대문구 ●●●●●센터 조성 공사'(계약기간 : 2020. 1. 10. ~ 5. 25.)에 따른 전기·소방 감리 용역을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기지급한 손해배상책임보험료 계 72,600원을 환수하고, 용역 계약 체결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

3. 소독업 관리·감독 업무 소홀

관련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3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소독업 취소가 된 것으로 보며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5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소독업의 신고, 휴업 및 폐업,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업무를 하면서 휴업신고 기간이 지난 (주)☆☆☆☆(대표 ■■■)가 시설물이 멸실된 상태로 2023. 12. 4. 감사일 현재까지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직권말소,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조치사항

시정

(주)☆☆☆☆(대표 ■■■)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절차를 진행하고,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4. 역학조사반원증 발급 업무 소홀

관련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역학조사 시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 역학조사 반원증을 2020년 1회 발급한 이후 발급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역학조사반 구성 시 누락없이 역학조사반원증을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5.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 소홀

관련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의료인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의료인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편, 「지역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의료법」 제3조의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0. 24. 감사일 현재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로 의료인(간호사)을 10차례 채용하면서, 총 9명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확인을 소홀히 함

조치사항

신분상주의

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의료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때에는 근무시작일 이전에 성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6.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및 채용서류 보존 부적정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하고, 해당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0. 24.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총 16차례에 걸쳐 공고기간을 7일 미만으로 하거나, 채용 공고문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고

또한, 총 13차례의 채용에 대하여 확정된 채용대상자 외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지 180일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파기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공고문에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채용이 확정된 채용대상자의 채용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며, 그 외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7. 기간제근로자 신분증 관리 업무 부적정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2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부서의 장은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분증의 규격, 기재사항,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증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해야 하며,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소속을 달리 할 경우 또는 공무원증을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별표2] 사무전결 구분에 따르면 공무원증의 발급은 팀장 전결사항으로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0. 24.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별도의 결재 절차 없이 기간제근로자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기간제근로자 신분증 발급·회수 및 발급대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감사일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 외 7명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음

조치사항

시정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중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 외 1명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신분증을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8.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의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로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근무 직원 특근매식비 지급계획」 [보건소장 방침(지역보건과-7637호, 2022. 2. 23.)]에 따르면 '주말 비상근무 해당 근무일은 특근매식비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할 것을 명시

지적사항

◇◇◇◇과는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코로나-19 관련 휴일근무 직원에 대한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면서, 같은 기간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반 특근매식비와 기획예산과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휴일 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소속 직원 34명에 대해 총 89회 계 1,408,000원을 과다 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특근매식비 계 1,408,0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휴일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추가 지급 시 일반 특근매식비와 중복하여 특근매식비를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9. 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사후정산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경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고, 경비 중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다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토부 고시에 의거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

또한 같은 예규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건설사업자의 보험료의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1. 11. ▲▲▲▲▲센터 CCTV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해당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원가계산서에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준공대금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징구·확인하여 실제 납입금액으로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하였는데도 사후정산을 소홀히 하여 822,218원을 과다 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차액 등 계 822,218원은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10.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19. 12. 20. ~ 2020. 3. 5. 기간 동안 ●●●●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1층, 2층 및 주계단실 등 도장공사를 실시하고 해당공사 준공 후 비상계단실 등 추가 실내 도장공사를 시행

그런데 ◇◇◇◇과는 ●●●●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도장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시공 업체, 공사기간 및 공사구간이 상이한 두 공사의 동일한 준공사진이 확인되고, 수량산출서상 타 업체의 공사구간이 준공사진에 포함되어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및 시정 등 적절한 조치없이 준공검사를 완료

조치사항

신분상주의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시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시 확인 및 시정 조치를 명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1.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부적정

관련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 1개월, 2차 위반의 경우 사업정지 8일,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사업정지 16일로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2. 12. 29.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은 ★★★정신과의원 외 1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하면서 시정명령기간을 1개월이 아닌 2023. 6. 30.까지로 과다 설정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정명령 기간을 정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2. 금연보조제 구매에 대한 물품검수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0. 24.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원에서 입찰하여 통보된 단가계약 업체에 대한 금연보조제 구매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입물품명세서상의 수량과 수불부상 납품받은 수량이 다름에도 변경계약 등의 조치 없이 업체로부터 물품 보관증만을 받고 물품검수 후 대금을 지급

조치사항

신분상주의

금연보조제 구매 업무 수행 시 서울의료원에서 입찰하여 통보된 단가계약 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납품받을 물품 수량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입물품명세서 상의 수량과 수불부상 납품받은 수량이 다름에도 물품검사를 완료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13.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기간 연장 절차 부적정

관련규정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및 아동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영양분야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영양플러스사업의 최대 참여기간은 총 1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대상자의 참여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음에도 영양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위원회(보건소장, 의사, 영양전문가 등 5인이상)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0. 24. 감사일 현재까지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 사업 참여기간 1년이 경과한 ■■■ 외 1명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 심의 없이 참여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의 참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연장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4. 비상근무 대체휴무 사용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또한, 「지방공무원복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로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2. 1. 1.부터 2022. 11. 2.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한 소속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를 사용하였음에도 비상근무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제외하지 않아 소속 직원 3명에 대해 총 4회 계 727,280원을 과다 지급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727,28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비상근무일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

15. 「의료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부적정

관련규정

「의료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 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 또는 치과 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총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1. 2.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치과의원 외 3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정원 기준 미준수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기간 없이 처분을 하였고, ◎◎한의원 외 2개 의료기관은 2023. 11. 2.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여부를 미확인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의료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시 이행기간을 명시하고, 이행기간 경과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6.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및 말소 처리 부적정

관련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6조의2 및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따르면 구급차는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최대 2년까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급차의 운용자는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여 차령만료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등 외에는 해당 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때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의 차령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말소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말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차령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업무는 과장 전결사항이고,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및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담당자 전결 사항으로 규정

한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1. 2. 감사일 현재까지 구급차의 차령 연장 및 말소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량번호 ▲▲가▲▲▲▲ 외 1대 차량에 대하여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으로 잘못 산정하는 등 차령만료일을 최대 41일 연장하여 설정

또한 ☆☆☆☆☆ 외 2대 차량에 대하여 차령 만료일 경과 후 차령 연장을 처리하거나 구급차 운용자의 차령 연장 신청서를 분실하여 담당자가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차령연장의 처리 업무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업무로 과장 전결사항임에도 과장 결재 없이 서울행정시스템의 구급차등관리대장에 전산으로만 차령연장을 처리하였으며, 사전에 구급차의 차령연장 연기 신청 없이 차령만료일 이후에 차령연장을 신청하여 차령을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행한 정황이 확인된 ■■■보■■■■의 운용자에게 차령초과 운행에 대한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하지 않음

한편 구급차 차령 초과로 인한 말소 미신고 차량 ○○도○○○○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 업무는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로 과장 전결 사항임에도 과장 결재 없이 서울행정시스템의 구급차등관리대장에 전산으로만 차량말소를 처리하였고 구급차 말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하지 않음

조치사항

훈계, 신분상주의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및 말소처리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관련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또한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따르면 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2. 11. 11.부터 2022. 12. 7.까지 기간동안 치과 기공소 및 안경업소 기획점검 결과에 따라 ★★안경원 외 6개소에 대한 폐업사실을 확인하여 2022. 12. 13. 직권폐업을 처리하면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폐업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계 1,400,000원을 부과하지 않음

조치사항

신분상주의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직권폐업 처리 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청문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8.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부적정

관련규정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따르면 누구든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또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안되며, 같은 법 제36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구청장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7일을 명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1. 2.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하면서 금지되는 의료기기 광고를 한 (주)□□□□(대표자 : ○○○)에 2021. 6. 15.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청취 시 관련 법령에 명시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 행정처분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19. 사고마약류 폐기처분 보고 소율

관련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변질·부패 또는 파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간의 경과, 재고관리 또는 보관 곤란 등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폐기처분 해야 하고, 구청장은 폐기 결과 보고서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1. 2. 감사일 현재까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에 따라 폐기하고 그 결과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면서, 총 230차례의 사고마약류 폐기 결과에 대해 미보고

조치사항

시정

사고마약류 폐기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230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에 따라 사고마약류를 폐기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0.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업무 소홀

관련규정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개월 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또한, 「의료법」 제63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별표 2]에 따르면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측정기관의 장은 측정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 또는 측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1. 2. 감사일 현재까지 방사선 측정업체로부터 매 분기 관내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의료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누락 없이 피폭선량 측정을 실시하였는지 확인을 하지 않음

조치사항

개선

의료기관별 등록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측정업체에서 제출하는 검사결과를 명단과 대조하여 분기별 미측정자 및 변동현황이 신고되지 않은 인원을 선별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1.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과소 지급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보건소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또한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2023년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 사업지침 알림”(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1, 2023. 1. 2.)에 따라 두 개 연도에 걸친 입원의 경우 기존 입·퇴원 1회에 대해 1회 건만 인정하여 차년도 입원은 미지급하던 기존 지침에서 변경되어 2022. 10. 27. 이후 입원자부터 2개 연도 각각 연도별 최대 13일까지 지급하도록 변경된 지침을 시달

지적사항

◇◇◇◇과는 2023년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 외 1명에게 변경된 지침을 미적용하여 1,517,250원을 과소 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과소지급하지 않도록 변경된 지침을 즉시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2.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부적정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1)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 제7호 타목 4)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1차 위반)을 명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1. 23. 감사일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면서 2023. 3. 15. 서울동대문경찰서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자로 통보받은 휴게음식점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통보된 범죄사실에 종업원이 유흥접객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통보해온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만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실시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경찰서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자를 통보 받아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3.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6시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1. 23. 감사일 현재까지 연도별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2년 안에 같은 내용을 위반한 ○○○○○ 영업자 ★★★ 외 4명에게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처분

조치사항

신분상주의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같은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4.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또한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의 기계·기구류에 대한 연 1회 이상 주기적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생취약지역인 전통 시장에 대해 단속위주의 행정보다 지도·계도·교육 등의 위생관리를 실시하도록 안내

지적사항

◇◇◇◇과에서 실시한 2022, 2023년도 전통시장 안전관리 점검 시 점검대상에 대한 지도사항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흥유지 외 4개소는 2022. 11월에 실시한 점검 및 2023. 9월에 실시한 점검에서 건강진단 미실시로 2년 이상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2023. 11. 17.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업소의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가 필요

조치사항

개선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후 조치 및 이행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점검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반복 지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5. 물품 구매 시 예산집행 절차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회계법」 제5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7.부터 2021. 12.까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용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물품 등 총 6건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법령 등으로 정한 지출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지출품의 없이 물품검수를 한 후 지출품의 및 대가를 지급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업무관련 물품 구매 시 법령 등으로 정한 지출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6. 집단급식소 시설조사 지연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1. 23. 감사일 현재까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한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점검 및 시설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최소 5일에서 최대 18일까지 신고사항 확인을 지연하여 실시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관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처리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7. 동물보호센터 점검 업무 소홀

관련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2020. 1. 1.부터 2023. 11. 23. 감사일 현재까지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업무를 하면서 관련 규정에 명시된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주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업무를 연 2회 이상 누락없이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28. 동물보호활동 지원 보조금 정산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사항

◇◇◇◇과는 동물보호활동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대표 ★★)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2022. 4. 19. 보조금 3,2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확인하면서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자료가 금액이 상이함에도 추가자료 요구나 시정조치 없이 정산을 완료

조치사항

시정, 신분상주의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발생한 정산 차액 13,995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보조금 정산 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



PART II

조사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
(행정안전부)

1. OO관광지 조성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비위내용

OO시 전임시장 000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道) 경관심의 승인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자, OO과장에게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로 추진하도록 지시,
OO과장 △△△는 시장의 지시를 받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이 아닌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로 위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유원시설물 설치를 허가하는 등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처분요구

중징계3, 경징계 3, 훈계 6, 수사의뢰

2.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와 산지관리법 위반 등

비위내용

OO시 OO국장 000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토지와 접한 농로 포장공사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회에 걸쳐 강요하고,
소유자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불가능해지자 산지(시유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대체 농로를 개설

처분요구

중징계1

3. 학예연구사(일반임기제) 채용 업무 부적정

비위내용

00시 00구 소속 공무원 000은 '21년도 학예연구사(6급) 1명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박사학위 수료자'를 우대요건으로 하여 박사학위 수료자인 자신의 대학원 제자를 채용(1명)하였고, 또한, '22년도 학예연구사(7급) 2명을 채용하면서 공고대로 평정하지 않고 요소별 점수를 임의로 달리 배점하여 평정하고, 공고문에는 없는 우대요건을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대학원 제자 2명을 채용

처분요구

중징계 1, 경징계 2

4. 0000센터 공무원 채용 부적정

비위내용

00군 소속 공무원 000은 공무원 채용 시 지원자들의 자격요건 미달자를 담당자에게 서류전형 합격처리 하도록 지시하였고, 면접점수 집계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여 면접 1, 2위가 바뀌는 등 당초 자격요건에 미달하였던 자가 면접 1위로 최종 합격하여 채용

처분요구

중징계 1, 훈계 2, 수사의뢰

5. 가족 업체에 공사 수의계약 특혜 제공

비위내용

00군 소속 공무원 000은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자 □□□에게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라고 소개하여 총 17건(546백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특혜 제공 또한, 계약 담당 팀장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이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처분요구

경징계 1, 훈계 1

6. 입찰정보 제공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비위내용

00시 소속 공무원 000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주 대가로 관, 제주도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처분요구

중징계 1, 수사의뢰

7. 준공 전 대금 지급 및 불법하도급 묵인 등 특혜 제공

비위내용

00시 소속 공무원 000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바닥 보수공사 비용만큼 잔디 수량을 부풀려 계약체결, 이 과정에서 보수면적을 과다하게 산출·집행하여 재정적 손실 초래

또한,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시 분할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업체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특혜 제공

처분요구

중징계 1, 경징계 1, 수사의뢰

8.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전용허가 등 부적정

비위내용

00시 소속 공무원 000 등은 △△△의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전용이 불가함에도 산지전용을 허가 (3,268㎡)하고,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복구설계 및 복구준공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여 △△△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게 하는 등 특혜 제공

처분요구

중징계 1, 경징계 1, 훈계 3

9.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 수수

비위내용

00시 소속 공무원 000은 택시 관련 업무를 하면서, 2차례에 걸쳐 택시종사자 등 직무관련자와 해외 골프여행 및 수차례 음주·식사 등을 접대받고,
2차례 제주도로 출장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817천원 상당의 골프 접대 수수

처분요구

중징계 1, 수사의뢰

10. 상습적 불법 건축물 신·증축 및 국유지 훼손 등 품위 훼손

비위내용

00시 소속 공무원 000은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 소유 건축물을 불법으로 무단 증축하고 연접 국유지를 무단 훼손하였고,
본인 소유 토지에 임차인이 컨테이너 및 창고를 무단 건축하는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처분요구

경징계 1

11. 업체관계자 알선 및 금품 등 수수 의혹

비위내용

00광역시 00구 소속 공무원 000은 계약담당자에게 지인 업체와 계약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받고 업체 관계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금품·향응 수수 의혹

처분요구

수사의뢰

12.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수수 등

비위내용

00시 00국장 000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포상금을 지급 받은 직원들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만원을 수수하고, 00과장 □□□은 4회에 걸쳐 포상금 총 250만원을 수수

처분요구

중징계 1, 경징계 1, 훈계 7

1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비위내용

00광역시 소속 공무원 000 등 6인은 적게는 1회, 많게는 3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와 관외 출장을 동행하면서 2,367천원 상당의 금품 수수를 하고,
위 000 등 4인은 출장 과정에서 시공사·감리단 등의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자차를 이용한 것처럼 교통비를 정산 처리하여 526천원 여비 부당 수령

처분요구

경징계 6

14. 건축허가 처분 관련 민원업무 등 부당처리

비위내용

00시 소속 공무원 000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담당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할조건의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했음에도 건축사가 허위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근거로 부당하게 건축허가 처분
공무원 □□□ 등 3명은 진정 등 27회의 민원과 행정소송을 통해 건축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후에도 공사중지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검토 없이 민원인에게 '적법하다'는 일관된 회신을 함으로써 업무 소홀

처분요구

경징계 1, 훈계 4



PART III

계약심사



2023년도

계약심사 추진실적

계약심사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절감건수
계	735	92,290,000	91,445,000	845,000	0.92%	228
공사	224	55,032,000	54,347,000	685,000	1.3%	103
용역	232	13,841,000	13,791,000	50,000	0.4%	62
물품	225	6,287,000	6,246,000	41,000	0.7%	54
설계변경	54	17,130,000	17,061,000	69,000	0.4%	9

일상감사

단위 : 천원

계(건수)	내용별(건수)		분야별(건수)				비고(예산절감액)	
	원안 시행	예산 절감	공사	용역	물품	설계 변경	요청액	절감액
241	170	71	58	39	88	56	118,248,000	2,300,000

기타사업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가이드 보완
- ✓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 구체화
- ✓ 한시적 심사기간 단축
- ✓ 서울시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 이용
- ✓ 사업부서 담당직원 원가계산 실무교육
- ✓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01. ▲▲▲▲공원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사업개요

공사개요	조합놀이대, 등 의자, 파고라 교체, 잔디 포장, 수목 식재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681,526,040원	621,000,000원	60,526,040원	8.88%

세부조정내역

○ 수목전정공사

- 일위대가와 내역서상 단위 계산 오류 조정(1일 시공량 단가#1주당 단가)

02. ▲▲▲ ▲▲▲ 진출입경사로 신설공사

사업개요

공사개요	진출입경사로 신설 : B=3.0m, L=94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4. 6.까지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003,321,000원	977,316,000원	26,005,000원	2.59%

세부조정내역

○ 철골공사(철공가공조립)

- 강재총사용량(톤) 조정 : 60톤미만 → 60톤이상~100톤미만
- 작업난이도 조정 : 1.2 → 1.05

03. ▲▲▲ 노후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공사

사업개요

공사개요	흡수식 냉·온수기 및 냉각탑 각 2대 철거·설치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642,642,000원	617,265,000원	25,377,000원	3.95%

세부조정내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대상액 기준 오류
 - 산출식 : (재료비+직노+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1.86%+5,349,000원 → (재료비+직노)×2.93%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기준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無 : 재료비+직접노무비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有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제외)
- 일반관리비 : 6% → 5.5%
 -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억원~30억원 미만 적용[조달청 제비율 기준]

04. ▲▲로 외 1개소 보행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

공사개요	보도블록 포장(T=6~8cm) 35a 경계석설치 L=2,516m, 측구설치 L=1,259m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852,960,000원	831,000,000원	21,960,000원	2.57%

세부조정내역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 산출식 적용 오류 조정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4(제경비)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4(제경비)

05. ▲▲▲등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전기)

사업개요

공사개요	태양광발전설비 35.4kW, 배전반 3면, 분전반 26면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119,470,000원	1,105,170,000원	14,300,000원	1.28%

세부조정내역

○ 서울형품셈 적용

- 케이블트레이(철제, 40,000mm²이하) 설치 : 내선전공 0.25인/m
- 앵커볼트 설치(13mm이하) : 내선전공 0.036인/개

06. ▲▲▲▲▲▲▲▲ 해체공사

사업개요

공사개요	건물해체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4,062.12㎡(지하층 일부 존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657,451,000원	643,790,000원	13,661,000원	2.08%

세부조정내역

- 간접노무비 요율조정(건축, 50억미만, 6개월이하)
 - 12.5%(조달청 제비율 기준, '23 .1. 2.) → 12.2%(조달청 제비율 기준, '23. 4. 28.)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요율 조정
 - 0.07%(건축공사) → 0.68%(비계·구조물해체공사)
-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 6.0%(5억~30억미만 건축공사) → 5.5%(5억~30억미만 전문공사)

07. ▲▲▲등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소방)

사업개요

공사개요	스프링클러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948,229,035원	937,724,000원	10,487,035원	1.11%

세부조정내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식 조정
 - 대상액 5억미만 : (재료비+직접노무비)×2.93%
 - 대상액 5억~50억미만 : (재료비+직접노무비)×1.86%+5,349천원
- 서울형품셈 적용
 - LED유도등 설치(직부형, 5W이하) : 내선전공 0.1인/개
- 금액의 단위표준
 - 설계서의 총액(도급비) : 1,000원 미만 버림[건설공사 표준품셈]

08. 여름철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사업개요

공사개요	가로수 조형전정, 임목폐기물 처리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96,300,000원	86,620,000원	9,680,000원	10.05%

세부조정내역

- 안전관리비 및 임목폐기물처리비의 직접공사비와 별도 경비 중복계상 조정

09. 공영주차장 7개소 확장실 환경개선공사

사업개요

공사개요	가설 및 철거공사, 미장 및 수장공사, 타일 및 금속공사, 도장공사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96,041,270원	187,100,000원	8,941,270원	4.56%

세부조정내역

- 간접노무비 요율조정(건축, 50억미만, 6개월이하)
 - 12.5%(조달청 제비율 기준, '23. 1. 2.) → 12.2%(조달청 제비율 기준, '23. 4. 28.)
- 기타경비 요율조정(건축, 50억미만, 6개월이하)
 - 7.8%(조달청 제비율 기준, '23. 1. 2.) → 5.8%(조달청 제비율 기준, '23. 4. 28.)

10.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근린공원)

사업개요

공사개요	목재골막이 2중 설치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948,229,035원	937,724,000원	10,487,035원	1.11%

세부조정내역

- 목구조체 해체 품 조정 : 인력 100% → 장비 50% + 인력 50%
- 목재 가공 및 설치 : 난이도 중 → 하 (도면 및 시공방법에 따른 조정)

11. 2023년 경로당 방역 용역

용역개요

용역내용	2023년 경로당 방역 용역(138개소×3회)
용역기간	2023. 10. ~ 12.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34,992,600원	34,874,000원	118,600원	0.34%

세부조정내역

- 인건비조정(시중거래가격 참조)
 - 방역기사(8명) : 600,000원 → 560,000원

12. 도서정리 및 장비 용역 연간 단가 계약

용역개요

용역내용	도서정리(MARC) 및 장비용역 연간단가 계약(11,750권)
용역기간	2023. 7. ~ 12.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0,362,750원	19,951,500원	411,250원	2.02%

세부조정내역

- 단가 조정(시중거래가격 참조, 문화체육관광부'2022년 MARC 구축 대가산정 가이드')
 - 도서정리(MARC) 및 장비단가 : 1,733원 → 1,698원

13. 초고층건축물 화재대응 현장훈련 실시 용역

용역개요

용역내용	초고층건축물 화재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용역기간	2023. 6. ~ 2023. 7.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1,980,000원	21,420,000원	560,000원	2.55%

세부조정내역

○ 단가 조정

- 차량화재 시연 : 600,000원 → 320,000원

14.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마당 운영 용역

용역개요

용역내용	관내 21개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으로 학교 맞춤형 4차 산업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역기간	2023. 10. ~ 2023. 12.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32,060,000원	31,330,000원	730,000원	2.28%

세부조정내역

○ 여비 조정(공무원 여비 규정)

- 강사 여비 : 1,440,000원 → 875,000원

15. ▲▲▲▲▲센터(박물관) 박람회 참가 및 리빙커머스 방송 용역

용역개요

용역내용	국내 최대규모 식품종합박람회 '제18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 서울한방진흥센터(박물관) 홍보 및 박람회 기간 중 서울약령시 한방상품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방송 진행
용역기간	2023. 11. ~ 2023. 12.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2,000,000원	21,890,000원	110,000원	0.50%

세부조정내역

○ 여비 조정(공무원 여비 규정)

- 국내여비 조정 : 400,000원 → 300,800원

16. 관내 위험가로수 정비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개요

용역내용	부패 및 동공 발생 등 관내 위험가로수 정비 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용역기간	2023. 10. ~ 2023. 11.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55,000,000원	54,486,000원	514,000원	0.93%

세부조정내역

○ 단가 조정(시중거래가격 참조)

- 폐기물 운반비 : 9,489,040원 → 9,084,979원

17.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용역개요

용역내용	전통사찰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수시보수를 통해 각종 재해로부터 문화재 보호 및 전통사찰 보존
용역기간	2023. 5. ~ 2023. 12.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9,200,000원	18,526,000원	674,000원	3.51%

세부조정내역

- 이윤요율 조정(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참조)
 - 이윤 : 2,143,541원(14%) → 1,531,100원(10%)

18. 경로당 운영물품 구매

구매개요

품 명	텔레비전 등
납품기간	2023. 3.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3,380,000원	12,680,000원	700,000원	5.23%

세부조정내역

○ 단가 조정(시중 거래가격 참조)

- 텔레비전 단가 조정 : 990,000원 → 890,000원
- 냉장고 단가 조정 : 1,060,000원 → 960,000원

19. 인터넷방송국 운영 스튜디오 조명장비 구매

구매개요

품 명	조명 등
납품기간	2023. 5.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2,028,500원	11,532,400원	496,100원	4.12%

세부조정내역

○ 단가 조정(시중 거래가격 참조)

- 조명(Amaran COB 60D LED) : 242,000원 → 220,000원
- 조명클램프(스피곳 KIT 09-01) : 27,000원 → 18,000원
- 조명스탠드(C-Stand 스튜디오 Grip arm) : 147,000원 → 130,000원

20. 구청사 외부 안내간판 제작·구매

구매개요

품 명	지주형 사인 등
납품기간	2023. 6. ~ 7.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30,250,000원	29,540,940원	709,060원	2.34%

세부조정내역

- 인건비 단가 조정 : 2023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21. ▲▲▲동 신청사 내·외부 사인물 제작·설치

구매개요

품 명	외부 케노피 사인 등
납품기간	2023. 8.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44,610,500원	42,718,500원	1,892,000원	4.24%

세부조정내역

○ 단가 조정(시중거래가격참조)

- 관내도사인 1F 방풍실 : 3,300,000원 → 3,000,000원
- 실명사인(벽부형) : 120,000원 → 80,000원
- 인건비/시공 : 300,000원 → 250,000원

22. 제설용 제설제 구매

구매개요

품 명	염화칼슘 등
납품기간	2023. 8. ~ 10.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59,500,000원	147,500,000원	12,000,000원	7.52%

세부조정내역

○ 단가 조정(시중거래가격 참조)

- 제설용 염화칼슘(25kg/포) : 370,000원 → 290,000원

23. 신형 민방위복 구매

구매개요

품 명	민방위 춘추복 등
납품기간	2023. 9.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6,834,600원	25,006,600원	1,828,000원	6.81%

세부조정내역

- 단가 조정(시중거래가격 참조)
 - 민방위 춘추복(신형) : 49,000원 → 45,000원

24. 불법 노점 재점유 방지 대형 가로화분 제작·설치

구매개요

품 명	대형 가로화분
납품기간	2023. 10.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9,922,000원	9,632,000원	290,000원	2.92%

세부조정내역

- 표준품셈에 맞게 미장공 및 공구손료 품셈 조정
- 장비 임대료 조정(물가자료 참조)
 - 레미콘 임대료 : 726,000원 → 388,000원

25. ▲▲유스호스텔 노후 비상방송장비 교체설치

구매개요

품 명	비상방송용 앰프 등
납품기간	2023. 10. ~ 11.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12,600,000원	12,278,000원	322,000원	2.56%

세부조정내역

○ 단가 조정(시중 거래가격 참조)

- 비상방송용앰프 단가 조정 : 3,550,000원 → 3,210,000원
- 기타 잡자재 단가 조정 : 214,953원 → 214,002원
- 통신내선공 및 통신설비공 : 2023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26.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합 제작 및 구매

구매개요

품 명	비상용품합 등
납품기간	2023. 12.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심사평가금액	절감액	절감률
29,298,000원	28,842,000원	456,000원	1.56%

세부조정내역

- 단가 조정(시중 거래가격 참조)
 - 비상은박담요 단가 조정 : 2,400원 → 2,000원



PART IV

청렴



1. 청렴 콘텐츠 공모전

추진개요

- 공모기간 : 2023. 10. 26. ~ 11. 15.
- 공모주제 :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동대문구』
- 공모분야 : 웹툰 · 카드뉴스 · 포스터
- 공모대상 : 전 직원
- 심사결과 : 최우수작 「내 꿈은 너야, 청렴아」등 6건 선정

추진내용

-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한 동대문구!」라는 주제로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관련 법령의 핵심내용이 담긴 포스터 및 카드뉴스, 부패와 함께 맞서는 의지가 담긴 웹툰, 괴롭힘·갑질 등 직장 내 부조리 근절을 독려하는 웹툰 등 다양한 작품이 접수되어 청렴 소식지 등 청렴 시책에 적극 활용

여러분의 청렴을 보여주세요!

청렴콘텐츠 공모전

등우이면 30만원!

공모 주제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동대문구」

- ▶ 조직 내, 일상생활에서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실천의지
- ▶ 직장 내 부조리(괴롭힘·갑질 등) 근절
- ▶ 청렴관련 법령(정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내용 및 사례

공모 요강

공모 분야 | 웹툰 · 카드뉴스 · 포스터

기 간 | 2023. 10. 26. (목) ~ 11. 15. (수)

공모 대상 | 청렴에 관심이 있는 직원 누구나

공모 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 (sh333@ddm.go.kr)

구분	인원	상금	비고
최우수	1명	30만원	참가자 전원
우수	2명	각 20만원	공직자 마일리지 20점
장려	3명	각 10만원	

결과 발표 | 2023. 11월 말 예정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청렴” 아

부패 NO

갑질 NO

청탁 NO

브라보! 멋지다 D.D.M

행복을 주는 동대문구

2. 청렴실천서약식 실시

추진개요

- 기 간 : 2023. 4. 3. ~ 4. 5.
- 대 상 : 전 직원

추진내용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 부서(동)가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 방안을 고민하는 청렴실천서약식을 개최
- 더불어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문에 서명한 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여, 전 직원이 부패근절·청렴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짐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문

우리 전 직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독대문구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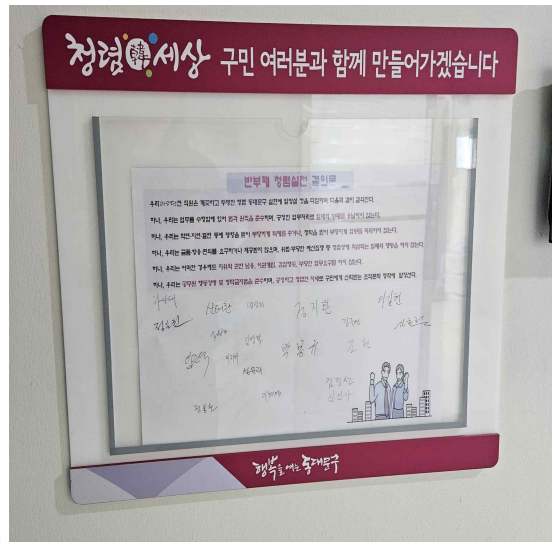
우니,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업무처리로 민생의 부패를 유발하지 않는다.

우니, 우리는 학연·혈연 등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특혜를 주거나, 정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지리하지 않는다.

우니, 우리는 금품·강요·권위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등 청렴상에 의심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니,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휘와 권한 남용, 이권개입, 갑질행위, 부당한 업무요구를 하지 않는다.

우니, 우리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며, 깨끗하고 정직한 자세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3. 청렴아 놀자! 이벤트 개최

추진개요

- 기 간 : 2023. 6. 16. ~ 6. 23. / 2023. 8. 16. ~ 8. 23.
- 참여대상 : 전 직원

추진내용

- 청렴 가로세로 낱말퀴즈, 사자성어 찾기, 청렴도자기진단 참여이벤트 등 ‘청렴아 놀자!’ 이벤트를 개최하여 직원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함



END OF SUMMER

청렴 이벤트

청렴 사자성어 찾기 : 총 4개!

청	주	안	빈	낙	도
영	렴	락	규	빈	치
원	퇴	결	장	례	세
청	출	지	백	유	수
유	주	시	사	세	봉
청	백	식	창	부	직

힌트

- 1: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지켜 즐김
- 2: 마을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음
- 3: 손을 씻고 공직에 봉사함
- 4: 위 사람이 청렴하면 아랫사람도 청렴함

4. 청렴라이브공연과 함께하는 청렴다짐 캠페인 실시

추진개요

- 일 시 : 2023. 8. 28.
- 장 소 : 구청 1층 로비
- 대 상 : 전 직원

추진내용

- 구청장 및 직원들이 청렴의지를 새긴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카리나·팬플룻양상블 공연과 함께하는 청렴 다짐 캠페인 실시



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실시

추진개요

- 일 시 : 2023. 9. 12.
- 장 소 : 청량리역 광장
- 대 상 : 청량리역 이용 고객 및 구민

추진내용

- 동대문구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청량리역 광장에서 이용 고객들을 상대로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활용하여 청렴실천 캠페인 실시



6.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실시

추진개요

- 일 시 : 2023. 9. 21.
- 장 소 : 구청 앞 광장
- 대 상 :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이용 구민 및 동대문구청 직원

추진내용

- 명절을 맞이해 구청 직거래장터를 찾은 구민들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리플릿 및 홍보물을 활용하여 개정된 청탁금지법 등의 내용을 홍보하며 청렴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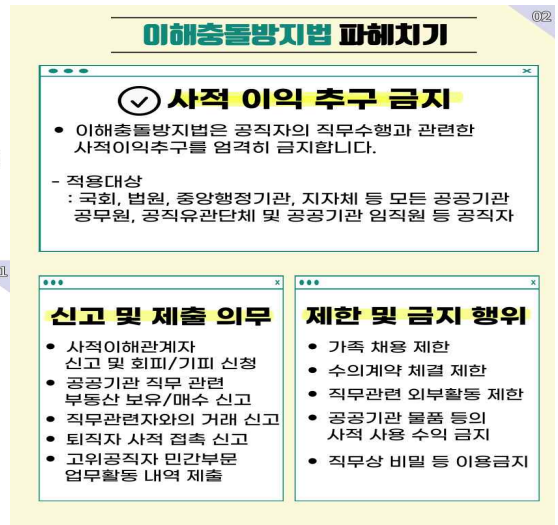
7. 청렴소식지 제작 · 배포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 ~ 12.
- 방 법 : 매월 1일 새울 행정시스템 게시판 게시
- 대 상 : 전 직원

추진내용

- 청렴 활동 소식, 청렴 관련 법령 바로알기, 흥미로운 청렴 이야기 등 청렴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매달 청렴소식지로 제작하여 새울 행정시스템 게시판에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 ◆ 이 사례집은 2023년 동대문구 자체감사 및 타기관 감찰 시 지적된 주요 사례 등을 수록하였으며, 감사 당시의 관련 법령·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감사사례집

- 발행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발행일 : 2024. 5.
- 주 소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 편 집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 2127-4009

【비매품】